

수원회생법원

폐지에정통지서

사 건 : 2021개회150997 개인회생

채 무 자 : 이영민(1989. 7. 31. 생)

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액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고, 그 지체액이 9개월분에 달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첨 '채무자 진술서'에 지체사유 및 미납금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.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첨부>

1. 변제수행 납입 내역서
2. 채무자 진술서
3.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

2023. 10. 11.

수원회생법원 제213회생위원 배범식

변제수행 납입 내역서

사 건 : 2021개회150997 개인회생

채 무 자 : 이영민(1989. 7. 31. 생)

위 사건에 관한 변제수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① 월 가용소득 : 1,588,160 원
- ② 현재까지의 변제예상금액 : 38,115,840 원
- ③ 현재까지의 총 입금액 : 25,156,726 원
- ④ 최초 변제기일 : 2021.10.25
- ⑤ 총 변제회차 : 24회차 (총36회차)
- ⑥ 미납액 : 있음

2023. 10. 11.

채무자 진술서

사 건 : 2021개회150997 개인회생

채 무 자 : 이영민(1989. 7. 31. 생)

채무자는 변제금 납부 지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.

1. 변제금 납부 지체사유 (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 첨부)

2. 미납금 해결방안 (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현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 첨부)

[예시]

- ①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진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(또는 2개월 이내)에 모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.
- ②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월 변제액에 추가하여 일정 금액씩(구체적인 금액 기재)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.
- ③ 기타

20

채무자 :

(서명 또는 인)

전화번호 :

※ 채무자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.

<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>

1. 채무자가 변제계획상의 변제액을 이미 지체하였거나 앞으로 일정 시점부터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가용소득의 변동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가. 현재의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병에 걸렸거나 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
- 나. 임신,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
- 다. 출산,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
- 라. 주택이 경매 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월세비용이 발생하였거나, 기타 사유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
- 마.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 체불, 채무자의 실직,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
- 바. 기타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용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

2. 변제계획 변경안을 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. 단,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, 최저변제액 투입의 원칙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- 가. 변제기간의 변동 없이 일정한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줄이는 방법
- 나.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을 추후에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방법
- 다.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의 지급을 중지하는 방법

※ 단, 인가된 원 변제계획상의 최초 변제일을 기준으로 3년의 변제기간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)의 변제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, 이미 1회 이상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은 적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시 인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※ 참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,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정본입니다.

2023. 10. 11.

수원회생법원

법원주사보 지현옥

